

구 분		
열람·서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장 선종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정규진 	
확 인 자	현장대응단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작 성 자	현장대응단 지방소방경 박경서	

##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12.

###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7. 12. 20.(수) 10:00 ~ 12:00
- ◆ 장 소 :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 참석위원 : 7명
  - ○○○ 변호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원장
  - ○○○ 교 수(○○대학교 ○○○○○ 연구센터 부센터장) \*부위원장
  - ○○○ 교 수(○○○○대 ○○○○대학원)
  - ○○○ 변호사(○○○생명보험 주식회사 변호사)
  - ○○○ 변호사(법률법인 ○○ 대표변호사)
  - ○○○ 과 장(○○소방서 재난관리과장)
  - ○○○ 단 장(○○소방서 현장대응단장)

#### < 배석자 >

- > 서울소방재난본부 ○○○ ○○○ / ○○○○○장 ○○○
- > (간사) 현장대응단 ○○○○팀장 ○○○ / ○○○○팀 담 당 소방경 ○○○
- > (서기) ○○○○팀 담당 소방경 ○○○
- > (진행) ○○○○팀 ○○○, ○○○, ○○○, ○○○

#### ◆ 진행순서

시 간 (60분)	내 용	비 고
09:50 ~ 10:00	10' 위원 등록	진행요원
10:00 ~ 10:05	05' 위원 소개	간 사
10:06 ~ 10:10	05' 위촉장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 ○ ○
10:11 ~ 10:15	05' 인사 말씀 * 본부장 퇴실	○ ○ ○
10:16 ~ 10:25	10' 심의위원회 개요 설명	○○○○팀장
10:15 ~ 10:30	05' 인사 말씀	○○○○○장
10:31 ~ 10:40	10' 위원별 개인 소개 및 상호인사	위 원

10:41 ~ 10:50	10'	위원장 호선 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위 원
10:51 ~ 11:40	40'	위원장 개회선언 및 안건 심의	위 원 장
11:41 ~ 11:50	10'	폐회선언	위 원 장
11:50 ~ 12:10	20'	간담회 장소 이동	진행요원
12:11 ~ 13:00	50'	식사 및 간담	참석자 전원

◆ 상정안건

- 위원장 (호선)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선출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
- 서울특별시 물적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심의
-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에 대한 평가

◆ 회의결과

구분	심의 안건	결 과
①	위원장 선출 및 부위원장 지명	위원장(○○○), 부위원장(○○○)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	수정 가결
③	물적 손실보상 가이드라인(안)	추후 재심의
④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	일부 수정 가결 및 지속 심의

본 회의는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경하였기에 위촉식 및 위원별 소개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회의진행사항 부분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함

□ 위원 발언 내용

〈간사 ○○○ ○○○○팀장〉

○ 위원소개 및 본부장 소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참석하신 위원분들을 소개 하겠습니다.(위원 개별 소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 본부장님께서 중양소방학교, 인천소방본부장을 거쳐서 7월에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 서울소방재난본부장〉

○ 모두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이런 중책을 맡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언론보도에서 불꺼졌더니 돈 내놔라 한다는 그 하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재현장에서 워 여러 가지, 화재 진압활동을 위해서 직원들의 고유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만, 혹은 실수나 아니면 정당한 활동을 하던 중에도 꺼지고 나면 보상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화재지역이 아닌 옆집의 인명검색을 위해 문을 개방하는 경우, 우리는 왜 불도 안났는데 문을 뚫느냐, 그런 것에 있어서 사비로 변상한다는 보도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3년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54건으로 나왔어요. 그중에 개인보상이 7건 정도가 개인 사비로 변상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잡해 질까봐, 문책 당할까봐 괜히 또 숨기고 그런 건수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재난현장의 물적손실에 관한 보상에 관한 조례를 3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없도록 뒷받침하고자 조례가 통과되고, 현재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으면서도,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상전담팀을 10월부터 운영을 했어요. 직제가 있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선 직원들 차출해서 본부에서 적극

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말만해주면 바로 본부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아무 신경도 안쓰고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전담팀을 마련했는데, 10월 19일부터 했는데 두달만에 34건이 들어왔어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조례로 보상해준 것도 있고 보형처리 한 것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그렇게 많았다는 게 아니예요. 조례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대부분 소액입니다. 몇 만원, 또 몇 십만원 정도 소액인데 큰 금액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에도 보면 벌집제거해주다가 다른 시도에서, 벌들이 막 달려드는걸 토치로 할 수도 있고 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토치로 하다가 암자가 탄 경우도 있고, 그런 소소하게 큰 건들이 있어서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의회 거치지 않고 재량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고 금액이 커서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발족이 됐는데 앞으로 소방관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사비로 변상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서 최선을 다하겠구요. 이런 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장활동을 하다보면, 보상을 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서서, 처음 전국적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도 처음입니다. 아마 서울시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거 같아요. 벤치마킹도 하고,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1-1) 위원장 선출

#### <간사 ○○○ ○○○○팀장>

##### ○ 중요 배석자 소개

소방재난본부 ○○○ 현장대응단장, 보상업무전담팀 ○○○담당 및 ○○○ 담당

##### ○ 위원장 선출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의견들을 내서 위원장을, 앞으로 위원장으로 뽑히시면 회의 소집도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고 회의 진행도 위원장님께서 하실 겁니다. 추천을 해주시고, 서로 지금 모르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위원장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은 절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소방 현직에 계신 두 분은 위원이시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 있구요.

#### <○○○ 위원>

##### ○ 위원장 추천

제가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다섯 분 중에 교수님이 두 분이시고, 변호사님이 세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수님 중에 한분이 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교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외부위원분들 중에 제일 60년대 생이시고 그러니까 맡아주시면 다른 위원분들이 잘 쫓아갈 것 같습니다.

#### <○○○ 위원>

##### ○ 위원장 추천 고사 및 추천

이건 제가 고사를 좀 하고싶은데,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연구 과제나 법학연구소 이런 일들이 너무 복잡해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제가 좀 망설였어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회의를 잘 나올수 있을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소방학교에 강의를 나간 인연이 있어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들이 있고 해가지고, ○○○○대, ○○인가?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오기는 했는데 이런 위원회를 맡아서 위원장을 하기에는 경험도 부족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위원으로 참석해서 제가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아무래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안에 있으니까 실무경험이나 현장경험이 많은 분들이 끌고 가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아시고 해서 잘 이끌어 가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간사 ○○○ ○○○○취팀장〉

○ 위원장의 자격요건 설명

참고로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 위원장 추천

저는 ○○○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방 관련 법규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일찍부터 참여하셔서 대비하시고 하셨기에, 아무래도 이런 관련 법규라던지 실질적으로 실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 위원〉

○ 위원장 추천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소방관님들의 복지라던지 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 ○○○○취팀장〉

○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견 수렴

○○○위원님께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서울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님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위원들 이견 없음)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위원들 모두 박수)

○ 회의 진행 설명

○○○위원장님께서 위원장직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지금부터 회의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전에 회의자료에 대한 안건이 네 개가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간략한 설명) 시작 전에 즉시 위원장님께서 심의안건이 갑자기 생기게 되었는데 부득불 천재지변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하면 부위원장이 하셔야되는데 부위원장을 지명을 하시고 지금 이 안건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시고 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의 모든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먼저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여계가 무겁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같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선출

제1호 안건중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가 주실 부위원장으로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전원 박수) 그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결정하였습니다. (전원 박수)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안)에 대한 심의

### <○○○ 위원장>

####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안건에 대한 설명

2호 안건이 서울특별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혹시 운영규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아마 이게 어제 저녁에 메일로 보셨죠. 그래서 아마 읽어서 보셔야 되는데 시간상 읽어 보시기에 무리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안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 각 조항 별 설명)

여러 위원님들 처음 보신걸로 알고있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신분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각 위원 심의안건 토의>

#### (○○○ 위원)

다른 자료들하고 보다보니까 조금 궁금증이 있는데요. 위원회 올라오는 안건이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와있고, 이게 이제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전부 위원회로 오도록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그부분에서도 본부장님이 200만원 이상인 건이지만 이건 위원회에 올라가지 않아도 될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건지, 제가 이 의문을 갖는 이유는 이게 조례시행규칙(안) 제일 마지막에 첨부가 하나가 붙는데요, 37페이지 조례 시행 규칙에 보면 제4조제4항에 보면 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이 2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딱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필수적으로 지금 여기 와야 되는 건들이 200만원 이상건이라고 하면 사실 이 조례 시행규칙상에서는 **200만원 미만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게 맞** 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 (선종문 위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은 조례가 지금 현재, 손실 보상안에 조례가 200만원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는건인지 혹시 지금 빼갈수 있는 것인지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요?

#### (간 사)

200만원을 정한 이유는요, 횡수가 너무 많습니다.

조례에 정해서 200만원 이하의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요구를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피해 시민이 100만원을 돌려달라,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50만원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를 하도록 돼있는데, 합의가 안되어있으면 200만원 이하일 경우라도, 우리 화재조사관들이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재 조사 해보니까 이제 우리는 50만원이야, 그런데 피해자는 100만원을 요구해, 안되는거죠?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할꺼예요. 그러다보니까 손해사정을 해보니까 50만원밖에 안났어요, 그래도 피해자는 죽어도 100만원을 요구해, 그랬을 경우에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했는데 그래도 피해자가 그걸 못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했을때 이제 피해자에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십시오, 라고 이제 안내를 하는거죠. 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합의를 전제로, 피해시민과 우리가 가액을 결정한거라고, 합의를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을 신속하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 위원) 딱 200만원일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 (○○○ 부위원장)

딱 200만원 일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거죠, 이하 미만이 용어 구분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간 사)

200만원 이하나 미만이나 아까 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딱 생각이 들었는데 조례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서울시에 변호사분들이 42분이 계세요. 그 분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네요.

(OOO 위원) 개념정리 그 부분만 조금 안되는 것 같네요.

(OOO 위원)

만약 딱 200만원을 청구한 사례에서는 반드시 손실보상위원회에 와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본부장님이 처리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 사)

200만원 일때 한다 안한다는 것은 법률 요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웬만하면 피해 상정한 것과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웬만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6개월 이내에 하면 되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면 충분히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정상일 것 이구요, 저희가 좀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적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고 있는 운영 규정이라든지, 세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효력보다 내부의 운영상의 절차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OOO 위원)

시행규칙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행규칙에서 200만원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걸 지금 시행 규칙 수정이 어렵겠지요?

(간 사)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어렵습니다.

(OOO 위원) 어렵죠.

(OOO 위원)

본부장님께 이야기해서 이걸 좀 바꿔야 할텐데.. 200만원 초과한 경우 이런식으로 운영규정에서 뭔가 어구를 서로 맞춰놔야 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아니면 단서를 하나 달아줘서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예외로 한다던가 혹은 본부장님이 운영규칙상에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꾸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 사) 아직 그거는 규정은 아직 통과가 안된거기 때문에 바꾸면 됩니다.

(OOO 위원장)

지금 현재, 방금 말씀 드렸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자체는 위원분들의 의견대로 수정·의결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간 사) 예, 맞습니다.

(OOO 위원)

조례시행규칙은 지금 수정이 어려울 것 같고, 운영규정을 조금만 보완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 사) 100프로 가능하구요, 오늘 여기서 정하는 운영규정이라든지 세칙을 수정·의결하시면 저희가 수정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OOO 위원장)

그러면 양수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회의자료 9쪽에 있는 제8조 심의내용 제1호에 보면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200만원 초과'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건을 올리고자 합니다만 양수지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서 부분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OOO 위원)

제 생각에는 수정을 하시고, 사후에 본부장님이 200만원 이하건에 단서는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OOO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제1호의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이것을 '청구금액 200만원 초과하는' 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8조 제1호 청구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심사 심의로 수정하여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OO 위원장) 혹시 이 의사봉을 두두려야 하는겁니까?

(간 사) 네 그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갖다 드립니다. 예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하고 마지막에 하십니다.

(OOO 위원장) 네, 그러면 제 8조 1호를 수정하고 가결하겠습니다.

### < 결 과 : 수정가결 >

- ▶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함  
(원안) 제8조 1. 청구금액 200만원 이상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수정) 제8조 1. 청구금액 2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청구에 대한 서류 등의 심의

### (3) 물적손실보상 운영세칙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심의

#### <○○○ 위원장>

#####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안건에 대한 심의 개시

그러면 3호 안건 되겠습니다. 물적 손실 보상 가이드라인(안)이 있습니다.  
3호 안건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각 위원 심의안건 토의>

##### (간 사)

3호 안건에 청구금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평가 하고 있고, 실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 처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조레나 어떤 시행규칙에 보면 정당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으로 인해서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당함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다, 기타 말씀해주신 영업 손해부분이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심의회 의결 과정에서라기 보다는 200만원이하 물적 손실 보상 운영에 있어 그 결정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생각 하에 손실 보상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각각 결정 사유와 각하 결정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금전적으로 산출하는 근거, 산출방식 등을 어디까지나 저 혼자 독단적으로 만든 사항이라 수정을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확보를 해서 장기간동안 만든게 아니고, 임시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수정하실 부분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 (○○○ 위원장)

회의자료 15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아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제2조 정의 제3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직무 집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가목**을 보면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는지는 사후적인 결과를 갖고 판단하거나 객관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조치 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판단한다.

**나목**, 현장대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재량권 행사 또는 불행사가 비례원칙을 현저하게 넘어서 재량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여겨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본다.

**다목**,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직무 집행을 한 경우 정당하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간사님께서 정당한 직무 집행 관련해서 어떤 걸 참조해서 만드셨나요?

##### (간 사)

어떤 문헌을 이걸 작성하면서 다양한 논문들을 참고로 했습니다. 정확히 어떤 문헌이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정당함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판례에서 보이는 추상적 종과실이 없다고 하면 정당하다고 봐야 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정당함, 적법함의 범위를 좀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좀 다양한 의미에서, 그런 판단아래 작성을 했구요. 사무적인 결과만으로는 굳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됐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런 건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가목에 담았구요. 다 목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으면 정당하다고 하고 나목 같은 경우는 재량의 범위를 넓게 봐서 정당함을 충분히 넓게 봐야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제가 지금 강의를 많이하는 편인데요. 내용중에 보면 이 내용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긴급체포의 정당성 요건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아요. 맞죠?

(간 사) 예. 다양하게 참고했습니다.

##### (○○○ 위원장)

에 긴급체포 요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니까, 긴급체포라고 해서 사람들을 48시간 내에 체포하는 방식인데 다른 위원님들께 모르실까봐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 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중 가목에 보면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객관적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판단한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현장의 경찰이다. 마찬가지로 화재 진압이라든지, 구조 구급 활동에서 가장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당시 방수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관 개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간 사)** 말씀하신 취지는 예 정확히 맞구요, 참고로 헌법상의 권리에서 긴급 체포, 긴급조치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제가 사전에 보고한 건 아닌데 의미 자체는 그렇습니다.

**(OOO 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이견 운영 회칙이 아닌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회칙을 만들 때는 형식과 실재를 갖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정당한 직무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좀만 더 부드럽게 다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OOO 위원)**

사후적인 결과를 가지고 판단이 아니라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로 해야 될 것 같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재량의 폭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여기 또다시 약간 애매한 것이 과실없이 직무 집행한다, 사실 여기를 중대한 과실로 넓혀야 하지 않을까, 경미한 과실도 포함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간 사)**

그건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틀 자체가, 과실이 개입되어 있으면 보상이 아닌 배상의 영역으로 봤고, 판례를 참조하면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의 영역도 소송으로 국가 배상 건이나 범법행위 쪽으로 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 기준을 통해서 본다면 경과실을 만약에 정당한 범주로 엄밀하게 규정을 해놓는다면은 경과실인 사안은 배상으로,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구상절차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OO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그냥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정당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좁혀지는 결과가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OOO 위원장)**

다목같은 경우라면 다목은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체계상 이게 있다고 한다면 개개인이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될 것 같구요. 정확히 말한다면 민원인들이, 청구인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소송이라든지 이런 과실들을 소방관들 개인이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가목 같은 경우를 보면 정당한 직무집행을 했는지 여부는 조치당시의 급박한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결과,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한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다듬는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이 부정적이고 뒤가 긍정적인 거니까 간사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적인 결과 만을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양쪽을 다 반영한다고 그런다면 당시 상황이 있을 것이고 사후 결과인데 두가지를 갖다가 잘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오늘 다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간 사)**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운영세칙 외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었거든요. 운영세칙하고 가이드라인은 어제 갑자기 보내드린건데 그걸 다 여기서 심의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다음번에 수정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또 수정안도 받고 그래서 다음번에 하는 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그럼 개념정리를 좀 하는 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이라는 말이 조례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조례에 5조에 보니까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정당한 재난 현장활동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손해배상 손실보상 아까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손해배상 손실보상의 기본 규정은 손실보상은 이제 적법한 공무집행과 관련되는거고 손해배상은 위법한 공무집행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일단 가해행위가 적법하나 위법하나 이거에 의해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갈리는 것이고 손해배상에서는 그런 위법한 행위가 고의·과실을 따지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과거에도 과실문제까지 직접 언급하고 있는 부분도 예컨대, 그 행위 자체는 전체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인데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던가, 그런 경우에 그것을 배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애매한 경우가 있을텐데요.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또 전면 과실이 있다고 손해배상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행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평가 된다면 손해배상이라는게 안될텐데, 적법하지만 경미한 과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보다는 오히려 손실보상으로 커버할 수도 있고, 이걸 운영회칙이 물론 내부적이더라도 대외적으로 구속력은 없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완전 규칙같은 것인데도, 이것을 이제 막상 집행하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의할 때, 규정할 때, 일단 좀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것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앞에 조례나 시행규칙에 대한 하부 내부 규칙이라서 조례나 시행규칙하고 면밀하게 관련 조문들을 대조하면서 혹시 조례나 시행규칙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나 정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와 관련해서 상위법 내용을 혹시 훼손하는 부분은 없는지 예컨대 제2조 제1호에 청구인 개념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조례에서 청구인을 정의하고 있거든요. 조례 제2조 제1호의 청구인과 이 운영세칙(안)의 제2조 제1호의 청구인이 대립해오 되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OOO 위원장)**

회의자료 14쪽을 보시면 제2조 제1호의 청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 세칙에 보면 이게 주어가 정확히, 주술관계가 정확히 안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조례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먼저 단서로 소방공무원이 활동중에 물적 손실 받은 사람이겠죠? 손실 받아서 요구하는 사항을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와 다른 사항이 있다고 하면,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이걸 보면서 시행 규칙, 우리가 세칙을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아까 저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간 사)**

지금 문상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나 시행규칙에 있는 용어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저희가 정하고 수정을 해서 해결을 했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게 7월달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손실보상 제1호에 보시면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 조항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정당한 소방활동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 정규진위원님도 얘기를 한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당연히 정당하게 출동을 받아서 갔다, 비번 날, 도의적으로 개별적으로 한 일이나 아니면 근무 날 출동 지령을 받고 아니면 비번 날이라도 출동 지령을 받고 한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볼것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긴급조치나 응급조치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것이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이나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나 이 문제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나 그러면은 우리 현장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것이, 아 이건 나 실수야, 아까 본부장님께서 잠깐 거론을 했는데요, 급박한 현장 상황이라는 말도 좀 안 맞다, 왜냐하면 별집을 제거하는데, 실제로 보상 사례가 가장 많은게 이겁니다. 별집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아래에 벤츠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주인이 없는거야, 그래도 집주인은 빨리 제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별집을 최대한으로 조심한다고 해서 제거하다가 기왓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스가 나서 400만원을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별집을 제거하는데 토치로 하다가 짐을 출랑 태워먹었어요, 3천만원을 국가 배상절차에 의해서 해주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으로 해주어야 되나, 손실보상으로 해주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판례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업무중에 경과실의 판단기준, 즉 실수의 판단기준과 재난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의 아무리 고도의 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냐, 이걸 가지고 판례 내용이 약간씩 다르게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가지는 판단 기준은, 일반인들이 보통 업무를 할 때보다 훨씬 더 굉장히 불리한 심리적인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면, 조례 제5조에 있는 정당한 소방활동이라는 것이, 소방공무원이 이 출동 지령을 받고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을 전부 정당하다고 보자, 이렇게 까지 한번 확대를 해서 의견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를 하셔서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OOO 위원장)**

오늘 회의가 이제 지금 중간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어제 급히, 일주일 전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이 상처받지 않게만 해주시면, 그런면에서 살펴볼것이 무엇이 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보아야 할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런 사항 위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회의자료 16쪽에 있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서라는 것이고, 제2호의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요건 분리, 청구인의 주체나 객체, 정당한 현장 활동 여부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구체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으로 보면 물적 손실을 입지 않은 자겠조, 물적손실보상 가이드라인 거기에 해당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간 사)**

이게 손실보상 전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아니구요. 만들게 된 취지 자체는, 사건처리를 했고, 처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고의·과실의 판단,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규정을 해놨구요.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를 상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구요.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보신 것과 정확히 동일하구요. 어떤 요건이나 규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부연설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OO 위원장)**

21쪽에 보면 이제 그 정량화표 세 번째 칸에 있는 200만원 이하부분과 그 관찰 기준이 당연히 서울시 기준일것일테고 다른 시도, 경기도라든지, 지금 22쪽에 보니까 정당한에 대한 것이 있고 다만, 23쪽에는 우리 위원들도 처음 봤을 꺼예요.

**(간 사)**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어떤 걸 정당함으로 해야하느냐, 어떻게 보면 소방공무원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다 정당하다고 치자고 한다면, 뭐 보상이나 해 줄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깎이 커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실무적으로 적용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OOO 위원장)** 그 사례적 내용을 좀 더 많이 풍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 사)**

제가 몇가지 좀만 보충을, 오늘 이게 첫날인데 이렇게 부담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정한것이라 그것 때문에 큰 부담없이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런 의견도 이제 마지막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합니다. 조례를 잠깐 봐주시면요.

**(OOO 위원장)** 34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간 사)**

예. 34쪽에 보려는 현재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세칙에는 이제 인적자원은 제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민방위기본법이나 이런 곳에서 배상을 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뺐 거구요. 5조에 보게되면 이제 정당한 재난현장활동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생활안전활동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강제처분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것들은 소방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 재난 및 안전관리 법에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좀 빠

진 부분들이 있어요 옛그저께 훈련을 하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돌맹이에 맞아서 다쳤어요. 이게 인적피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치료비정도는 물어줘야 할 수도 있구요.

현재는 보증을 들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실제로 훈련을 하다보면 옆집에 뭐가 떨어져서, 실수로 소방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포함을 시켜줘야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한정을 해놨어요 지금. 제2조 보면 재난현장활동이란 화재등의 재난현장활동 혹은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나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기본법에는 위라고 되어있느냐하면 소방공무원은 위기 시에, 위급하다고 필요할 경우에는, 응급 부당행위를 지을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시민이나 민간인한테도 임무를 줘야되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2조에 재난현장에 총괄 지휘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이 총괄 지휘의 범위 안에 자원봉사자, 민간인 모든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할 수가 있구요. 그러려는 지나가는 민간인이 소방공무원이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해라, 그러다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사례들 중심으로 보다보면 긴급한 상황만 해줘야하나, 그런데 긴급하지 않은 상황이 워낙이면 소방법에 정해져있는 생활안전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성분이 밤늦게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있어요, 열쇠가 없어요. 소방관들한테 뜯어 달라고 했어요. 보통 안뜯어주지만 사람의 위해가 관계가 된다하면 출동을 해서 뜯어주는거죠. 뜯어준 사람이 문만 따달라고 했는데 왜 문턱까지 파괴했나, 이게 4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배상을 해줘야해야 되느냐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판례 비슷하게 이런 경우에는 안해줬습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내부적인 것은 대외적인 법 효력은 없지만 이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만약 문제가 돼서 나중에 소송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보호받지 않겠나. 가장 애매한 것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빌라에 갔는데 2층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소방관이 안고고 놔두면 3층까지 다 옮겨 타겠죠. 그런데 소방관이 불을 끄는건 소방관의 당연한 의무니까 끄는 거예요. 그런데 3층의 요구조차 사람들이 안나오고 있어서 나오라고 했는데 문을 두드려도

안나오니가 뭐 작은방에 있었겠죠. 그래서 문을 따고 강제개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3층에 있는 사람이 배상요구를 했는데 이걸 배상을 해주어야하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기본법을 가지고 해설을 할때는 원래 이것 해주면 안되거든요. 왜, 좀만 늦었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을 안따서 방치했다면 하루 지나서 일가족이 사망한채로 발견된 사례도 있고, 직접적인 피해 범위 그것을 어디로 정할 것이냐. 이런 점이 있죠, 그러다보니깐 이런 점이 있죠? 8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불은 큰방에서 났어요, 연기가 꼭 찼습니다. 큰방에 불은 켜는데 작은방에 문이 잠겨있어서 소방관들이 혹시 몰라서 이 작은방 문을 뚫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보상해줘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당연히 보상 안해주거든요.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연소 확대 범위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게 변호사님들한테도 몇 번 물어보니까 이 결정을 못내리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체적으로 보시면 다음번에 회의 사례가 있을 때 충분히 좀 더 폭넓게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OOO 위원장)**

저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매우 수고하시는 것들 잘 알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방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부분에 있어서 사례들을 좀 더 풍부했으면 합니다.

**(간 사)** 알겠습니다.

**(OOO 위원장)** 이것은 이번 제3호안건은 다음회의에서 수정안으로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가이드라인(안)을 해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호 안건은 다음회의에서 추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결 과 : 추후 심의 >**

-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보상 운영세칙(안) 및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지고 제2차 회의에서 추후 심의하기로 의결함

**(4) 대시민 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에 대한 심의**

**(OOO 위원장)**

**○ 대시민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안)에 대한 심의**

그러면 4호 안건 되겠습니다. 대시민 홍보를 위한 브로슈어(안)이 있습니다. 제4호 안건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각 위원 심의안건 토의)**

**(간 사)** 각 위원님들 앞에 있는게 브로슈어입니다. 시민들 전체한테 홍보할게 아니구요, 피해 시민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라든지 하는 것을 안내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OOO 위원장)** 간사님께서 직접 만드신겁니까?

**(간 사)** 제 담당이니까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안하고 그림 스케치만 들어가 있는데요, 스케치안들이 조금 변경이 되고 스케치 넣고 하면 잘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OOO 위원장)** 스케치들이 색칠을 소방관 그림들에 대한 스케치에 색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간 사)**

예. 전반적인 절차와 형식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저희가 한가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이 보상업무 TF팀이 하는 일이 손실보상 뿐만이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민원관계 업무에 대해서나 전반적으로 다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일차적으로 직원이 전화만 주면 현장에 24시간 언제든 나가서 구급대원 폭행건이건 물적손실 보상이건 보험이건 자동차 사고건 간에 한 번에 가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토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호응도 굉장히 좋고, 정착이 되려면 이런 것 하나하나 잘 잡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적보상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한 내용중에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손실보상관련해서는 12건 정도 했습니다. 전체 34건중에, 다른 건들도 있지만 저희 직원들이 요구하는 것

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이러면 물적손실보상이 지금 12건인데 앞으로 가면 1년에 아마 100건 이상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OOO 위원)**

브로슈어의 보상요건을 보시면요,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거나 재난상황을 야기 또는 손실발생 원인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라고 했는데 이게 둘 다 없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없거나가 아니라? 방해한 행위가 없고, 손실발생 원인의 책임도 없어야지만 구상 청구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방해한 행위는 있는데 책임은 없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보상요건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서요.

**(간 사)**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조례 5조 단서에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보상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청구인 주차위반을 했다거나 불법건축물인 경우에 안 해주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OOO 위원)**

본문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하고 단서에서는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사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이리이러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또 '보상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니깐 문구가 조금 혼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만 소방활동활동에 방해가 있거나 법령위반인 경우에는 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 사)** 예 긍정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는 문구를 조금 바꿔서 수정하겠습니다.

**(OOO 위원)**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넓게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 문구 한 부분만 보면 법령을 위반한 행위도 소방활동을 방해한 행위도 둘 다 해당하지 않아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게 맞다면 문구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호, 2호로 바꾸던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1호, 2호로 하시던지, 보상요건은 조금 중요한 부분이긴 아니까요.

**(간 사)** 예 맞습니다. 그건 빨간색으로 박스를 넣겠습니다.

**(OOO 위원)** 배포는 안된건가요?

**(간 사)** 아직 배포 안됐습니다. 제작하는 과정이니깐요, 수정 가능합니다.

**(OOO 위원)** 청구요건 중에 청구기한이 있고 요건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요건에 넣는게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이 요건은 법적인 청구절차에 넣어도 어떨까 싶긴 하구요. 물론 넓게 보면 요건에 해당되긴 하겠지만.

**(OOO 부위원장)**

문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한 청구는 발생한 날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절대로 넘어가서 알려주고 사실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항목에는 없다' 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셔야 나중에 또 브로슈어에는 이렇게 해놓고, 보상과정에서.. 요즘 시민들은 많이 이제 성숙해지셔가지고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명백한 오히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명백하게 있다는 명백하게 알려 주시는게 더 나아요. 물론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려고 이 경우에도 보상이 요런요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되면 시민들은 더 헛갈리게 돼요. 다 해주는 걸까?

**(간 사)** 저도 몇 번 고치다 보니까 저도 헛갈려요.

**(OOO 부위원장)**

아니면 이 그림에도, 제가 원전안전위원회 브로슈어를 또 위원으로서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예스 오어 노를 그냥 아예 써주는 거예요. 크게 보상 요건 예스 한 다음에 이 경우 노 해서.. 이 경우, 시민들은 이런 그림들을 더 잘 보잖아요. 글을 읽지 않고 요건에 예스 보고, 노 보고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이 보상 요건이. 그렇게 하면 더 이해도도 높아지고, 가독성도 더 높아지고 할 것입니다.

**(간 사)** 알겠습니다.

**(OOO 위원장)** 제4호 안전에 대해서는 일부수정하기로 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심의하기로 하겠습니다.

**< 결 과 : 수정 가결 및 계속 심의 >**

▶ 대시민 홍보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은 일부수정(보상요건)하여 가결하고 추후 개최되는 위원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심의하기로 함

## (5) 폐회

### (OOO 위원장)

오늘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토록하고, 일단 오늘 이 회의자료를 준비하시고 오늘 회의 자체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여주신 소방재난본부 직원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1호 안건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은 위원장으로 저 OOO과 부위원장으로 OOO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또, 2호 안건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심의대상으로 청구금액 200만원 초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3호 안건인 운영세칙(안)과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는 일단 추후 심의토록하고,

4호 안건인 대시민홍보 등을 위한 브로슈어(안)은 일부수정 가결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회의진행을 위해 준비해주신 우리 소방재난본부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차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